

이천시제2의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1998. 11.
제출자 : 이천시장

 제안이유

제2의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2의 전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위원회는 제2의 전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기능을 수행함(안 제2조).
- 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의회의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부시장,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 제2의 전국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에 준하는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이천시제2의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의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2의 전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천시에 제2의 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전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전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전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의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2. 부시장과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 제2의 전국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제2의 전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 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서기는 제2의 건국추진팀장이 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